

## 경운대학교 기획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경운대학교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제규정의 제정, 개폐 등의 조사연구 및 정비를 함에 있어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2조(조직)**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.

1.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
2. 위원은 경운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3.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3조(임기)**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4조(회의)**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종합계획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학제 및 학사행정의 연구 개선에 관한 사항
3. 기구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4.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
5. 제 규정의 제정, 개폐, 정비
6. 교육관계 법규 및 규정자료의 조사, 연구
7. 제규정집의 편찬
8. 규정용어의 개선 및 정비
9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분과위원회)** 위원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.

**제7조(전문위원)** 제6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에는 필요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전문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경운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8조(수당)**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위원회의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